

#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 안 번호	1113
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징수대상시설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~서초구 우면동의 총연장 12.4km의 왕복 6~8차로 관악터널, 신림터널, 서초터널, 교량 및 부속시설
- 영업소 2개소(금천영업소, 선암영업소)

### 나. 영업소당 최초통행료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경 차	소 형	중 형
800	1,600	2,800

※ 경차 : 50% 할인 적용,

대형차량 :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통행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됨

### 다. 통행료의 산출기초

-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(붙임 참조)

### 라. 징수기간 : 2016.7월초부터 30년간

마. 통행료 징수방법 :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(ETCS)징수 방식 혼용

바.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

-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(붙임 참조)

사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: 붙임 참조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서울공공투자센터 검토의견(2016.3.17.)

- 사업비, 물가반영, 자기자본 비율 등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며,
-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최초통행료 산정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

※ 작성자 :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김정식 (☎ 2133-8073)

## 최초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

### 1. 최초통행료

#### 가. 최초통행료 산출근거

〈실시협약 제29조 최초통행료의 산정〉

③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기준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결정

#### 나. 실시협약상 최초통행료

구 분	소형	중형
기준 통행료	1,113	1,892
기준 통행료 수정	1,087. <sup>646</sup>	1,848. <sup>999</sup>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	1,626. <sup>739</sup>	2,765. <sup>456</sup>
실시협약상 최초통행료	1,600	2,800

#### - 적용 소비자물가지수

구 분	물가지수
2000년 11월말 소비자물가지수	73. <sup>69</sup>
2015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	110. <sup>21</sup>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	149. <sup>57%</sup>

※ 2015년 12월까지의 실제 물가지수를 반영

다. 최초통행료 산정

-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실시협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10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최초통행료를 산정함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경 차	소 형	중 형
최초통행료	800	1,600	2,800

라. 차종 구분

구 분	대 상 차 량 제 원	차 종
소 형	2축 차량, 윤폭 130mm초과 279.4mm 이하 (승용차, 16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)	1종
중 형	2축 차량, 윤폭 279.4mm 초과, 윤거 1,800mm이하 (대형버스 17인승이상, 중형화물 2.5톤 이상~10톤 이하)	2종
	2축 차량, 윤폭 279.4mm초과, 윤거 1,800mm초과 (3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, 2축 5.5톤~10톤 미만 화물차)	3종
대 형	3축 대형 화물차(10톤 초과)	4종
	4축 이상 대형 화물차(20톤 초과)	5종
경 차 할인대상	배기량 1,000cc 미만 경자동차, 길이 3.6m이하, 너비 1.6m 이하, 높이 2.0m 이하	6종

2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

가. 면제 대상(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1호)

구 분	내 용
관련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</li> <li>○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</li> <li>○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국가유공자(1~5급) 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</li> </ul>

나. 감면 대상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2호)

구 분	내 용	감면율
경자동차	○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경자동차(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)	50%
장애인 차량	○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국가유공자 차량	○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5·18 민주유공자	○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	○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
\*비영업용 차량(시행규칙 제5조제4항) :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
-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3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

관리청	시 설 명	연 장 (km)	통행요금
서울특별시	우면산터널	2.96	소형·중형 : 2,500원
서울특별시	용마터널	3.57	소형 : 1,500원, 중형 : 2,500원 대형 : 3,200원
강원도	미시령터널	3.69	소형 : 3,300원, 중형 : 5,600원 대형 : 7,200원
대구광역시	대구남부순환도로 (앞산터널로)	10.44	소형 : 1,400원, 대형 : 2,100원
경기도	수석-호평	11.2	소형 : 1,300원, 중형 : 2,600원 대형 : 3,300원
경기도	일산대교	1.84	소형 : 1,200원, 중형 : 1,700원 대형 : 2,300원

※ 통행요금은 2016년 2월 29일 기준